

## ■ 계약 일정 및 장소

타입 유형	일정 및 시간	계약 체결 장소
<b>수시접수</b>	홍보관 운영시간 - 10:00 ~ 16:30 홍보관 휴무일 - 매주 일요일	제일풍경채 옥정 314동 후문 1층 홍보관

## ■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본인 계약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분증</li> <li>- 인감도장 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)</li> <li>-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(본인발급용)</li> <li>- 주민등록 등본 (상세)</li> <li>★ <b>신혼부부 분리세대 및 예비신혼의 경우 배우자 (예비 배우자)의 주민등록 등본(상세) 추가</b></li> <li>- 가족관계 증명서 (상세)</li> <li>- 혼인관계 증명서 (상세) - 고령자 유형 제외</li> <li>- 주택소유확인 (신혼부부, 고령자 유형 - 세대원 전원 / 청년유형 - 본인)</li> <li>: 행정복지센터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기간: 23년 ~ 24년 / 전국단위 / 주택분 선택하여 발급)</li> <li>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전체 발급)</li> <li>- <b>소득확인서류 (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) - 제일풍경채 옥정 홈페이지 구비서류안내 참조</b></li> <li>- 계약금 (임대보증금의 10%)</li> </ul>
제3자 대리인 계약시 (배우자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</li> <li>- 계약자 인감도장</li> <li>-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부 (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 위임용, 본인발급용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)</li> <li>- 계약자의 주민등록 등본 (상세)</li> <li>★ <b>신혼부부 분리세대 및 예비신혼의 경우 배우자 (예비 배우자)의 주민등록 등본(상세) 추가</b></li> <li>- 계약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(상세)</li> <li>- 계약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(상세) - 고령자 유형 제외</li> <li>- 계약자의 주택소유확인 (신혼부부, 고령자 유형 - 세대원 전원 / 청년유형 - 본인)</li> <li>: 행정복지센터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기간: 23년 ~ 24년 / 전국단위 / 주택분 선택하여 발급)</li> <li>- 계약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전체 발급)</li> <li>- <b>계약자의 소득확인서류 (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) - 제일풍경채 옥정 홈페이지 구비서류안내 참조</b></li> <li>- 계약금 (임대보증금의 10%)</li> </ul>

- 모집공고일 [24.04.19(금)]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

## ■ 임대보증금 납부

구분	금융기관명	납부계좌	예금주
계약금, 잔금	하나은행	149-910025-20604	(주)제일하나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-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타입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%입니다. (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)
- 무통장입금 시 동·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: 3010201홍길동)
-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시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.

# 소득서류 안내 및 소득 기준표

## ■ 특별공급(신혼부부 및 신혼\_분리형, 청년 및 청년\_분리형, 고령자 및 고령자\_분리형)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·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· 재직증명서	· 해당직장 · 세무서
	신규취업자	·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· 재직증명서	·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·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	·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	·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	· 세무서
	신규사업자	·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· 사업자등록증	· 국민연금관리공단 · 세무서
	법인사업자	·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· 법인등기부등본	· 세무서
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·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·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	· 세무서 ·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· 수급자 증명서	·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	·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(직인날인)	· 해당직장	
일용직 근로자			
무직자	· 비사업자 확인 각서 (분양사무소 비치)	· 접수장소	

## ■ 특별공급 소득 기준

(단위 : 원)

소득기준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1순위 (100%)	3,482,964	5,415,712	7,198,649	8,248,467	8,775,071	9,563,282	10,351,493	11,139,704
2순위 (110%)	3,831,260	5,957,283	7,918,514	9,073,314	9,652,578	10,519,610	11,386,642	12,253,674
3순위 (120%)	4,179,557	6,415,854	8,638,379	9,898,160	10,530,085	11,475,938	12,421,792	13,367,645

※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4.19(금)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, 성명, 관계 등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및 '상세'로 발급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하며,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공통서류 (특별공급)	○		신청자격별 구비서류	본인	·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	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	
	○		인감도장	본인	·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	
	○		신분증	본인	·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·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이름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
	○		확약서	본인	·홍보관 비치	
	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·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	
		○	추가 개별통지서류	본인	·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	
	○	사실증명원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/ 소득이 없는 세대원, 소득없음 사실증명원		
특별 공급	공통 서류	○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	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홍보관 비치	
		○	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	본인	·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·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산조단사)제출 :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조단사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·출산이행각서(홍보관 비치)	
	신혼 부부 및 신혼 분리형	혼인 상태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혼인신고일 확인서, "상세"로 발급
			○	소득확인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혼인 예정	○	예비신혼부부사약서	본인	·홍보관 비치,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필요
		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예비 배우자	·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
			○	소득확인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청년분리형	○	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(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)	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, "상세"로 발급	
		○	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	직계존속	·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	
	고령자		○	소득확인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	·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(청약자)	·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, 청약자 기준)	
	○		위임장	-	·홍보관 비치, 청약자인감도장 날인	
	○	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·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	

※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4.19(금)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, 성명, 관계 등이 표기되도록 '전체포함' 및 '상세'로 발급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비속 포함)으로 간주하며,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